

1세대 1주택 과세특례(인구감소지역주택,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)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
------	-----

신청인 (양도자)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소 (전화번호 :)	

양도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	④ 소재지	
	⑤ 취득일	⑥ 양도일
	⑦ 거주기간 년 이상 년 미만	

⑧ 구분	양도 주택(또는 조합원입주권)외 주택 내역						⑬ 주택가격 구분
	⑨ 소재지	⑩ 취득일	⑪ 면적	⑫ 소유자			
				성명	주민등록번호	양도자와 관계	
[] 인구감소지역 주택							
[]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			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[]제68조의2, []제98조의8에 따라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-

신청인 제출 서류	1.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: 인구감소지역 주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: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	수수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2. 토지·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. 토지·건축물대장 등본	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"⑧ 구분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8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해당하면 인구감소지역 주택란에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8조의8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란에 [V]표시로 구분합니다.
- "⑨ 소재지"란: "⑧ 구분"란에서 선택한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- "⑩ 취득일"란: "⑧ 구분"란에서 선택한 주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.
- "⑪ 면적"란: "⑧ 구분"란에서 선택한 주택의 전용면적을 적습니다.
- "⑫ 소유자"란: "⑧ 구분"란에서 선택한 주택 소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양도자(신청인)과의 관계를 적습니다.
- "⑬ 주택가격구분"란: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 취득일의 「소득세법」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,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 경우 취득가액을 적습니다.
- "⑨ 소재지"란부터 "⑬ 주택가격"란까지 작성 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내역이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첨 가능합니다.